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 선고 2020나5842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 선고 2020나5842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8 선고 2018가단5028979 판결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

담당변호사 임태호, 김자원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하채은

변 론 종 결 2021. 9. 30.

판 결 선 고 2021. 11. 4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7. 8. 선고 2018가단5028979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7. 11. 6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142,192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유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협의이혼은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 살피건대 을 제7,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고소한 사건에서 2021. 2. 18.자로 무혐의 처분(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20년 형제12366호)이 난 사실, 원고는 C이 이혼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2020. 8. 6. 사전 예고없이 집행된 유체동산압류절차 당시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의 동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.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,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정형, 판사 구광현, 판사 최호식

별지